

高麗前期 賦稅의 收取構造

朴 鐘 進*

- | | |
|-------------------|-----------------------|
| I. 머리말 | III. 郡縣單位의 賦稅와 民戶의 부담 |
| II. 賦稅의 收取單位와 郡縣制 | IV. 맷음말 |

I. 머리말

高麗時期 사회경제사 연구는 토지 구조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에 따라 고려시기의 경제기반과 경제구조의 상당부분이 밝혀졌다.¹⁾ 반면, 고려시기의 經濟構造를 이해하는데 있어 토지구조와 표리관계를 갖고 있는 收取體系 및 財政構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각 稅目에 대하여 그 내용과 收取기준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토지구조의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稅目에 비하여 일찍부터 주목되었던 田租의 경우에는, 公田과 私田의 문제, 토지의 所有權과 收租權의 문제와 관련하여 田租率과 그 성격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²⁾, 貢物³⁾, 畜役⁴⁾에 대하여는 최근에

* 사학과 전임강사

1) 高麗時期 土地制度史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閔賢九 〈土地制度〉《韓國史論》2(高麗編), 國사편찬위원회 1977.

姜晉哲 〈中世史〉《震犧學報》57, 1984.

2) 고려시기 田租의 연구 현황 및 그 성격에 대하여는 朴鍾進의 〈高麗初 公田·私田의 性格에 대한 재검토〉(《韓國學報》37, 1984)을 참고 할 것.

3) 貢物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鄭亨愚, 〈高麗貢物制度에 대하여〉《史學會誌》5, 1964.

李惠玉, 〈高麗時代 貢賦制의 一研究〉《韓國史研究》31, 1980.

4) 畜役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 기초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각 稅 目을 국가가 어떻게 정수·운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검토가 적었다고 보아진다. 물론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潛運⁶⁾·祿俸制⁶⁾·王室의 財政⁷⁾등이 연구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고려시기의 수취구조나 재정운영구조와 연관되어서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고려시기의 수취구조 및 재정구조에 대한 연구 방향은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고려 중앙국가나 지방재정 구조의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제도 등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한 고려 국가의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기초 작업의 하나로서 고려시기 賦稅의 收取構造의 한 측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李貞熙〈高麗時代 徒役의 運營과 그 實態〉《釜大史學》8집, 1984.

李貞熙〈高麗後期 徒役收取의 實態와 변화〉《釜大史學》9집, 1985.

李惠玉〈高麗時代 廡(役)制研究〉《梨花史學研究》15집, 1984.

그 밖에 고려시기 수취체계 일반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있다.

白南雲〈第8篇 封建的收取樣式의 諸形態〉《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1937.

今堀誠二〈高麗賦役考覈〉《社會經濟史學》9-3, 4, 5호, 1939.

姜普哲〈제 6장 農民의 負擔〉《高麗土地制度史研究》, 1980.

李惠玉〈高麗時代 三稅制에 대한 一考察〉《梨大史苑》18·19합집, 1982.

李惠玉〈高麗時代 稅制研究〉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5) 潛運制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있다.

丸龜金作〈高麗의 十二漕倉에 就하여〉《青丘學叢》21, 22호, 1935.

孫弘烈〈高麗潛運小考〉《史叢》21·22합집, 1977.

北村秀人〈高麗初期의 潛運에 대한 一考察〉《古代東아시아史論叢》上, 1978.

北村秀人〈高麗時代의 潛運制에 대한 一考察〉《朝鮮歷史論集》上 1979.

崔完基〈高麗朝의 稅徵運送〉《韓國史研究》34, 1981.

6) 祿俸制에 대하여는 다음과의 논문이 있다.

李熙德〈高麗祿俸制의 研究〉《李弘植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1969.

崔貞煥〈高麗祿俸制의 成立過程〉《大丘史學》15, 16집, 1978.

崔貞煥〈高麗祿俸制의 運營實態와 그 性格〉《慶北史學》2, 1980.

崔貞煥〈高麗祿俸制의 變遷 — 田制와의 관계를 中心으로〉《大丘史學》18, 1980.

洪中昇〈高麗食貨志外官祿制의 批判〉《朝鮮歷史論集》上, 1979.

7) 周藤吉之〈高麗朝로부터 朝鮮王朝에 걸친 王室財政 — 特히 私藏庫의 연구—〉《東方學報》10-21, 1939.

8) 그러한 입장에서의 연구는 특정한 시기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지만 다음의 글들이 참고 된다.

安秉佑〈高麗初期 財政運營體系의 成立〉《高麗史의 諸問題》1986.

朴宗基〈高麗 部曲制의 構造와 性格 — 收取體系의 운영을 中心으로—〉《韓國史論》10, 1984.

글에서는 고려시기 부세의 收取單位를 郡縣制로 파악하고 당시의 수취구조를 중앙에서 각 군현을 단위로 부과한 부세와 그 군현 단위 부세의 내용을 구성하는 군현소속 民戶의 부담이라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는 가운데, 고려시기 세목에 대한 用例 혼란의 해결이나 부세의 수취과정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전망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고려시기 수취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보다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필자 나름대로 재정리 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 연구의 밑거름을 삼고자 한다.

II. 賦稅의 収取單位와 郡縣制

고려시기 국가의 賦稅⁹⁾收取가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초기의 연구자로 부터 주목되어 왔다.¹⁰⁾ 그리면서도 아직 고려시기 부세의 수취구조에 대한 정리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료의 부족과 용어의 혼란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고려시기 부세의 수취는 군현단위로 이루어졌지만, 각 군현의 중앙에 대한 부담량은 각군현의 民戶로 부터의 수취에 의지하게 된다. 즉 民戶가 국가, 결국은 국가의 하부구조인 군현에 부담하였던 기본세는 군현단위 부세의 주 내용을 이루게 되지만 그 稅目的의 명칭이나 수취기준, 성격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시 부세의 수취과정은 民戶→郡縣, 郡縣→中央이라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¹¹⁾

9) 이 글에서는 「賦稅」라는 용어를 특정 稅目的으로서가 아니라, 收取一般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10) 今堀誠二의 앞 논문.

11) 李惠玉은 그의 논문 〈高麗時代 貢賦制의 一研究〉와 《高麗時代 稅制研究》에서 고려시기 稅目的 용례와 관련하여, 租稅·貢賦는 국가가 州縣을 대상으로 할 때의 용어이고, 租·調는 州縣이 그것을 所管內의 民으로부터 직접 거두는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해서, 당시 부세의 수취단계를 두단계로 나누고, 그것을 당시 부세의 용어상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필자 또한 그러한 시도에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당시 부세의 수취구조의 문제를 용어상으로 구별하는 것은 일단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점은 이씨 스스로 인정하는

그리한 수취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장으로 미루고, 본장에서는 고려국가의 부세수취가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에서 각 군현을 단위로 정수하던 부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田賦(田稅)와 土貢(外貢)이었으며, 이것은 합쳐져 貢賦라 불리우기도 하였다.¹²⁾

다음 기록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田賦·土貢의 수취단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① (韓康은) 高宗時에 登第하고 여러번 옮겨서 監察御史가 되었다. 나가서 金州의 守令이 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田賦가 항상 규정액에 차지 않아 守令이 많이 과면되었었다. 康이 비로소屯田의 폐한 것을 다스려서 곡식 2,000餘石을 일으니 更民이 편안하였다. (《高麗史》卷 107, 韓康傳)¹³⁾

② 忠肅王 5년 5월에 教를 내리기를 “一. 巡訪使가 定한 田稅는 每年 州郡이 그 額數에 의거하여 收租하고 있는데, 權勢之家가 거부하고 납입하지 않으니 鄉吏와百姓이 납에게 빌려서 그 數를 채워도 끝이 없어 失業·流亡한다.(그러나) 稅를 납입하지 않는 자는 權貴라도 피하지 말고 紹察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같은책, 卷 78, 食貨 1 租稅)¹⁴⁾

자료 ①의 내용을 통하여, 金州에는 국가에 부담하던 田賦의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으며, 韓康이 守令으로 부임하기 이전, 많은 守令들이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여 파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각 군

접이기도 하다. (《高麗時代 稅制研究》p. 17)). 아울러 고려시기 稅目에 대한 용어상의 혼란과 관련하여, 稅目的 用例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 군현을 단위로 정수되는 부세에 田賦와 土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필자 나름의 편의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 土貢(外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貢賦라는 용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貢賦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로는 군현 단위의 土貢의 용례로도 쓰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田賦를 포함한 군현 단위의 現物稅일반 더 나아가서는 賦稅와 같이 收取一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용어에 대한 설명은 글의 진행과 더불어 구체화되리라 생각한다.

13) 「高宗時 登第 累遷監察御史 出守金州 前此田賦常不滿額 守多坐罷 康始理屯田之廢者 得穀二千餘石 更戢民安」

14) 忠肅王 5년 5월 下教「一. 巡訪使所定田稅 每歲州郡 據額收租 權勢之家 拒而不納 鄉吏·百姓 稱貸充數 無有紀極 失業流亡 其不納稅者 勿避權貴 紹察以聞」

현 별로 田賦의 액이 정해진 것은 金州에 한하지 않았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하겠다. 韓康이 金州에 守令으로 파견된 때는 高宗末에서 元宗初로서, 이 시기는 몽고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때였으며,¹⁵⁾ 元宗 10년 稅額이 조정되기 이전이었다고 생각한다.¹⁶⁾ 자료 ②의 내용은 忠肅王이 忠肅王 元년 父王인 忠宣王의 주도로 재조정된 稅額¹⁷⁾ 중 田稅에 대하여 한 언급인데, 이에 대하여 忠肅王은 巡訪使가 정한 田稅는 매년 州郡이 정해진 액수에 따라서 收租하도록 되어 있는데, 權勢家가 자기 뜻의 田稅를 내지 않아, 州郡의 鄉吏·百姓들이 그 州郡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빌어서 충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忠肅王 元년 개정된 田稅도 매년 州郡을 단위로 징수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田賦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土貢의 경우도, 光宗 즉위년에 각 州縣의 貢賦額이 정해진 이후,¹⁸⁾ 계속하여 군현을 단위로 부과되었음을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① 文宗 21년 2월 庚午에 制하기를 “지금부터 州縣은 魚脯를 바치지 마라”고 하였다. (《高麗史》卷, 8)¹⁹⁾

② 高宗 4년 10월에 安東·慶州·晉陝州·尚州·靈岩·羅州·全州·場廣州·淸州·忠州 等 10道에 使臣을 보내어 諸州의 土貢을 득축하였다. (같은책, 卷

15) 몽고 침략이후의 재정상황에 대하여는 朴鍾進의 <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性格> (《韓國史論》 9, 1983)을 참고할 것. 당시에 閑地를 개간하거나, 屯田을 경영하여 국가경비에 충당하였던 예로는 다음이 있다.

(《高麗史節要》卷 17, 高宗 43년 2월 「制 諸道被兵凋殘 租賦耗少 其令州縣其人耕閑地收租補經費 又令文武三品以下 權務以上 出丁夫有差 防築梯浦·瓦浦 爲左屯田 獵浦·草浦 爲右屯田(이 하생 랙)」)

16) 고려시기의 稅額조정은 고려 초에 稅額이 정해진 후, 기록상으로는 元宗 10년 (1269)에 처음 나타난다. (朴鍾進의 위 논문 참고) 따라서 이 이전 시기의 경우도, 부세의 수취는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17) 忠肅王 元년 忠宣王의 주도로 이루어진 稅額조정에 대하여는 朴鍾進의 위 논문을 참고할 것.

18) 《高麗史》卷 87, 食貨 1 田制 貢賦 定宗 4년 「光宗即位 命元甫式會·元尹信康等 定州縣歲貢之額」

이에 대하여 安秉佑는 <高麗初期 財政運營體系의 成立>에서, 태조이래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공부의 수취기준을 재조정하여 주현이 납부해야 할 공부의 액수를劃定한 것으로 보았다.

19) 文宗 21년 2월 庚午「制 自今州縣勿貢魚脯」

21)²⁰⁾

- ③ 忠烈王 4년 2월에 旨를 내려서 安東·京山府管內 郡縣의 貢賦는 大府庫·迎送庫·小府庫 等에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元成殿에 내게 하였다. (같은 책, 卷 78, 食貨 1 貢賦)²¹⁾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土貢·貢賦 및 그것의 한 품목으로 보이는 魚脯를 중앙에 납부하는 단위는 州縣·諸州·郡縣이었다.²²⁾ 또 忠肅王 元년 稅額을 조정하는 가운데 “先王이 州縣을 설치하고 貢賦를 정하였다”²³⁾는 기록을 통하여도 위와 같은 점을 살필 수 있다.

田賦와 土貢의 징수가 군현단위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賦稅의 감면도 군현단위로 이루어졌음은 《高麗史》食貨志 賑恤條 부세의 감면기록을 통하여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다음 기록들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肅宗 6년 4월 甲寅에 詔하기를 “지금은 농사철인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州郡의 관리가 내뜻을 받들지 않고 德音을 회피하여 免除된租稅가 民에 그 혜택이 미치지 않았을까 걱정스럽다(이하 생략)”고 하였다. (《高麗史》卷 11)²⁴⁾

②明宗 25년 9월에 詔하기를 너희 郡縣吏들은 나의 말을 잘들어, 포함된租를 5년에 한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라”고 하였다. (같은 책, 卷 80, 食貨 3 賑恤 災免之制)²⁵⁾

위 글들은 국가에서 내린 賦稅減免令의 혜택이 백성들에 미치도록 왕이 군현의 관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를 통하여 국가의 부세감면

20) 高宗 4년 10월 「遣使於安東·慶州·晋陝州·尚州·靈岩·羅州·全州·揚廣州·清州·忠州等十道督諸州土貢」

21) 忠烈王 4년 2월 「下旨 以安東·京山府管內郡縣貢賦 除大府·迎送·少府等庫所納外 皆輸元成殿」

22) 물론 이 경우, 「貢賦」에는 田賦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의 부세수취가 군현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아는데는 마찬가지이다.

23) 《高麗史》卷 78, 食貨 1, 貢賦 忠肅王 元년 正월 「忠宣王諭田民計定使曰 先王置州縣 定貢賦 敘民以時 以充國用 (이하 생략)」

24) 肅宗 6년 4월 甲寅 「詔 方今農時 天久不雨 恐州郡官吏不體予意逗撓德音所免租稅使民不被其澤(이하 생략)」

25) 明宗 25년 9월 「詔 其爾郡縣吏 敬聽朕言 其逋租 限五年寬假」

은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 졌으며, 실제적인 백성들의 감면혜택은 각 군현의 守令·鄉吏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賦稅의 收取와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군현의 守令에 있었음은 물론이다.²⁶⁾

이 밖에도 부세의 징수 및 감면과 직접 관계가 있는 量田²⁷⁾, 戶籍의 작성²⁸⁾ 및 潛運²⁹⁾ 등도 州縣을 단위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가의 재정에 충당되는 부세의 징수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군현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부세의 수취단위가 된 군현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屬郡이나 屬縣의 경우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顯宗 10년 5월에 獅山縣·解顏縣 等의 今年租稅를 缴減하였다. (《高麗史節要》卷 3)³⁰⁾

② 文宗 12년 2월에 都兵馬使가 아뢰기를 “安西都護府 界內의 鐵貢은 전에는 兵器에만 충당하였습니다. 근래에 興王寺를 창건하면서 賦稅를 더 내도록 하니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鹽州·海州·安州 등 三州의 軍器貢鐵³¹⁾을 2년간 감하고 오직 興王寺의 쓰임에만 제공하게 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줄이기 바랍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같은책, 卷 5)³²⁾

③ 忠烈王 4년 2월에 旨를 내려서 安東府와 京山府 管內 郡縣의 貢賦는 大府庫·迎送庫·小府庫 등에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元成殿으로 내도록

26) 고려시기 부세 수취권이 각 군현의 守令에 있었음은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도 살필 수 있다.

《高麗史節要》卷 15, 高宗 16년 10월 「臨陂縣令 田承雨 嫪上將軍金鉉甫廣植田園盡收田租入官 又以其田與民 鉉甫托按察使崔宗裕 還徵其租(이하 생략)」 즉, 臨陂縣令이었던 田承雨가 金鉉甫의 농장에서 토지를 걷어 입관시키고 있다.

27) 고려시기의 量田이 군현단위로 이루어졌음을 《高麗史》卷 78, 食貨 1 田制 經理條의 端宗 7년 正月, 文宗 13년 2월, 文宗 13년 3월의 기록을 참고한 것.

28) 《高麗史》卷 79, 食貨 2, 戶口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 州郡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

29) 같은 책, 潛運 「國初 南道水郡 置十二倉(중략) 又於西海道 長淵縣 置安瀾倉 倉置判官 州郡租稅 各以附近輸諸倉(이하 생략)」

30) 顯宗 10년 5월 「蠲獅山·解顏等縣今年租稅」

31) 「軍器貢鐵」은 海州·鹽州·安州에서 軍器監에 납공하도록 되어 있는 鐵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32) 文宗 12년 2월 「都兵馬使奏 安西都護府界內鐵貢 舊充兵器 近創興王寺又令加賦民不堪苦 請減鹽·海·安三州 二年軍器貢鐵 專用興王之用 以紓勞弊 從之」

하였다. (《高麗史》卷 78, 食貨 1, 貢賦)³³⁾

먼저 자료 ①에 보이는 獅山縣・解顏縣은 頤宗 10년 당시 慶州의 屬縣이었다.³⁴⁾ 또, ②의 경우, 興王寺의 창건과 관련하여 安西都護府界內의 鐵貢의 감면을 거론하면서, 당시 海州의 속현이었던 鹽州・安州³⁵⁾가 主縣인 海州와 같은 선상에서 그 감면이 논의되고 있다.³⁶⁾ 또한, 자료 ③의 “安東・京山府管內郡縣”이라는 표현 또한 安東・京山府 管內의 속군현들이 공부 부담의 단위로서 운영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主縣이 행정적인 차리 즉 부세수취와 관련된 업무는 관할하였겠지만, 속군현 역시 독자적인 수취단위로 운영 되었다고 생각한다.³⁷⁾

위에서 본 것처럼 속군현들도 外官이 파견된 縣令官級 이상의 군현과 함께 부세의 수취단위로 운영되었음을 분명하다 하겠다. 고려 시기의 속군현이 부세의 수취단위로서 뿐아니라, 그와 관련된 量田의 단위로도 운영되었음을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 수 있다.

靖宗 7년 正월에 戶部가 아뢰기를 “尚州管內의 中牟縣, 洪州管內의 槽城郡, 長湍縣 管內의 臨津・臨江縣 等은 民田의 多寡와 賽堵이 不均하므로, 관리를 보내 量田하여 食役을 균등히 하기를 바랍니다”하니, 이에 따랐다.(《高麗史》卷 78, 食貨 1, 經理)³⁸⁾

33) 「忠烈王 4년 2월」「下旨 以安東・京山府管內郡縣貢賦 除大府・迎送・小府等庫所納外皆輸元成殿」

34) 《高麗史》卷 57, 地理 2, 東京留守官 慶州 참고. 그런데, 위 자료 ①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가록이 《高麗史》卷 80, 食貨 3, 賑恤 恩免之制에는 「鶻道州管內獅山・永州管內解顏等縣今年租稅」라고 되어 있으나, 《高麗史》地理志에서는 道州의 실체를 찾을 수 없으며, 解顏縣의 主縣으로 되어 있는 永州는 頤宗 10년 당시 獅山・解顏縣 등과 함께 慶州의 속현으로 되어 있어, 〈食貨志〉의 가록은 약간의 차오가 있는 듯 하다.

35) 《高麗史》卷 58, 地理 3, 安西大都海州 참고,

36) 그런데 朴宗基는 〈高麗의 郡縣體系와 界首官制〉(《韓國學論叢》8집, 1986)에서 界首官의 기능과 관련하여 界首官은 자기 界內(管內)의 속군현에 대한 收取를 독자적으로 행하는 한편 行政的으로는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고 있다고 하면서, 위의 자료 ②를 그 예로서 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 자료는 속현이 주현과 뚜렷이 하나의 수취단위로 운영됨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37)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명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선, 主縣과 屬縣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8) 靖宗 7년 正월 「戶部奏 尚州管內中牟縣 洪州管內槽城郡 長湍縣管內臨津・臨江等縣 民田多寡賽堵不均 請遣使量之 均其食役 從之」

위 글에서 民田의 多寡와 賣堵이 不均하여 量田의 실시가 요청되고 있는 中牟縣・櫛城郡・臨津縣・臨江縣 等은 당시 尚州・洪州・長湍 등의 여러 속군현 중의 하나였다.³⁹⁾ 이같이 主縣에 소속된 여러 속군현 중 하나와 두개의 속군현만이 量田의 실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量田이 속군현을 기준으로도 실시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단지 그 앞에 主縣을 기록한 것은 행정적인 主屬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만일 量田이 主縣을 하나의 단위로 실시되었다면 위와 같이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部曲・所 등도 부세의 갑면단위로 운영되었던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部曲・所를 포함한 “部曲制” 역시 하나의 수취단위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는 피한다.⁴⁰⁾

이상에서 본 것처럼, 고려시기 부세의 수취는 군현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속군현은 행정적으로는 主郡縣을 통하여 중앙에 연결되었지만, 속군현 또한 현령판급 이상의 군현과 마찬가지로 고려시기 부세의 수취단위로 운영되었다.⁴¹⁾

III. 郡縣單位의 賦稅와 民戶의 부담

앞장에서 고려시기의 부세수취가 屬郡縣을 포함한 군현을 단위로 이루어 졌음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군현단위 부세의 내용과 그것의 부과 기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군현 단위 부세의 내용을 실제로 조

39) 《高麗史》地理 1의 長湍縣・臨江縣・洪州 旁, 地理 2 尚州 참고.

40) 고려시기의 「部曲制」가 일반 군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취단위로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高麗史》卷 80,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補宗 3년 10월 「祿亭于大廟 諸州・府・郡・縣・部曲 減今年租稅之半」

같은책 補宗 5년 2월 「免州・府・郡・縣・部曲・雜所 今年稅布半」

같은책 災免之制 補宗 7년 3월 「三司奏 東京管內州・郡・鄉・部曲 十九所 因去年久旱 民多飢困 乞依令文 撫四分以上免租 六分以上免租調 七分以上課役俱免 已輸者 聽減來年租稅 制可」

41) 李義權은 〈高麗의 郡縣制度와 地方 統治政策〉(《高麗史의 諸問題》)에서 고려군현들은 曺格의 高下나 主縣・屬縣에 관계 없이 독자적인 통치 구역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정 단위를 이루어, 下位 행정구역이 上位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등하게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달하는 民戶의 부담 및 그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고려시기 중앙정부가 각 군현을 단위로 징수한 것은 크게 현물부담과 노동력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당시 군현단위로 부과한 것 중 현물부담과 관련된 稅目으로는 田賦(田稅)와 土貢(外貢·貢賦), 進上(朔膳) 등이 있었으며, 노동력부담과 관련된 것으로는 畏役이 있었다. 먼저 각 稅目的 용어 정의와 그 부과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구체적 내용은 民戶의 부담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田賦는 토지소유자와 國有地 경작자로 부터 징수하는 田租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田賦가 군현을 단위로 일정량이 정해져 있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같이 군현단위로 정해진 田賦의 액수는 각 군현의 토지 結數 중 국유지와 국가 수조지의 크기와 관련하여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각 군현에 소속된 넓은 의미의 국가 收租地⁴²⁾의 田租 중 지방 경비로 충당되는 것을 제외한 부분이 곧 군현단위 田賦의 양을 구성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군현단위로 부과된 田賦의 양은 과중한 것이어서, 각 군현의 守令들은 이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閑田을 개간하거나,⁴³⁾ 斤田을 경영하는 등⁴⁴⁾ 편법을 사용하여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현단위로 부과된 現物부담으로는 田賦 외에 土貢이 있다. 土貢은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며⁴⁵⁾ 이것은 外貢으로도 쓰였지만 고려시기에는 貢物·貢賦⁴⁶⁾라는 용례로 더 많이 쓰였다고

42) 朴鍾進의 앞 논문 〈高麗初 公田·私田의 性格에 대한 재검토〉 참고.

43) 芮樂全撰 〈張文緯墓誌銘〉 《韓國金石全文》中, 「時(睿宗代: 菏州)民飢荒 公省力役 使民服公田不顧者 斫麥茹搗 厥穀連歲大穰 以充貢賦(이하 생략)」

44) 註) 15) 참고.

45) 土貢(貢物)의 이러한 의미는 중국古代로 부터 기원한다고 하겠다. 즉 《書傳》 卷 3, 禹貢篇에는 당시 8州의 厥田·厥賦의 등급과 厥貢의 품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貢에 대한 설명을 “下戲其土所有於上也”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 설명은 후에 붙여진 것이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생각한다.

46) 고려시기의 貢賦의 용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리하여 貢賦라는 용어는 貢物과 같이 쓰이며, 田稅·요역과는 다른 稅目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菏자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만, 貢賦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군현단위의 田賦와 土貢을 합하여 군현단위의 現物稅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박종진의 〈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성격〉 p. 58–59의 註) 37을 참고할 것.)

하겠다.

당시 군현 단위로 부과된 土貢에는 常貢(歲貢)과 別貢이 있는데 常貢은 貢案⁴⁷⁾에 수록되어 매년 정해진 액수를 정해진 중앙 관청에 납부하는 常例의 貢物이었으며, 别貢은 왕실이나 정부의 각 기관이 수요에 따라서 때 때로 부과하는 别例의 貢物이었다.⁴⁸⁾

常貢은 중앙 정부의 수요를 진재로 하여 각 군현의 產物과 크기에 따라 징수하였다. 顯宗代에 각 군현의 크기를 丁수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라 鄉吏의 定數를 조정하였는데,⁴⁹⁾ 이 때 군현의 크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던 丁의 성격에 대하여는 단언을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각 군현의 분류가 각 군현의 부담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분류에 따른 부담량은 고려초 지방제도의 정비, 그와 관련된 量田,⁵⁰⁾ 戶口조사⁵¹⁾의 시행과 제를 같이하여 재조정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각 군현의 戶口수와 土地結負數가 土貢의 詳定기준이었다고 생각하나, 别貢의 경우는 특정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군현 단위의 土貢은 각 군현에 소속된 民戶가 부담하던 調布, 각 군현민의 役(貢役)을 동원하여 조달한 물품, 각 군현에 소속된 所⁵²⁾의 생산

47) 貢物의 징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장부로 생각되며,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高麗史》卷 8, 文宗 17년 正월 戊申「三司奏 賢嶺縣 及西北面咸州籌田場地 產黃金請附貢籍」

같은책, 卷 84, 刑法 1 職制 忠肅王 5년 5월 「敎(중간 생략) 一. 帝所別進 海產若蛤蠣等物 都津丞申烜 於年例外 擃加其數 并其舊額 載之貢案 大爲民害 已將申烜 下更治罪 其削烜所增額」

48) 姜普哲의 앞 논문 <農民의 負擔> p. 279 참고. 단, 고려 시기의 기록에는 “別宮貢戲”을 别貢으로 보는 것도 있어 참고된다. 《高麗史》卷 18, 穀宗 16년 3월 丙寅「諫官 伏闇上疏 請罷別宮貢戲 不聽 (중간생략) 又多取私第爲別宮 誅求貨財名曰別貢 使宦者監領 貪緣營私 時旱荒疫癘中外道殣相望」

49) 《高麗史》卷 75, 選舉 3, 鄉職 顯宗 9년條 참고.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李純根은 <慶州先生案>의 내용을 들어서 丁을 중심으로 군현의 크기를 조정 하려는 고려 국가의 입장은 고려 태조대부터 견지되었다고 하였다.

李純根, <高麗初 鄉吏制의 成立과 實態>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50) 고려초 量田설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洪中昇 <高麗前期의 量田制에 대하여> 《朝鮮學報》 109, 1986.

安秉佑 <高麗初期 財政運營體系의 成立> 1983.

51) 고려초 戶口조사의 실태에 대해서는 許興植의 《高麗社會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81)의 緒論이 참고된다.

풀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겠다.⁵³⁾

군현단위의 현물징수로는 田賦·土貢 외에 進上이 있다. 이것은 地方官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 바친다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시 되었다. 고려시기의 경우, 그 부과 대상이나 부과기준 등 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기록에 보이는 朔膳·進奉方物⁵⁴⁾ 등이 당시의 일종의 進上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군현단위로 부과한 노동력으로는 稕役이 있다. 중앙에서의 稕役징벌이 군현단위로 이루어 졌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은 없지만, 고려시기 노동부대로 인식되고 있는 州縣軍의 편제⁵⁵⁾나 朝鮮初 稕役制 운영의 경우를 고려할 때,⁵⁶⁾ 고려시기의 稕役제도 現物賦稅와 같이 군현단위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국가에서 군현단위로 징발하는

52) 고려시기 所의 納貢品은 그 所의 소속에 따라서 직접 중앙의 各司나 瓽실에 예속되어 직접 그 생산물을 납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北村秀人〈高麗時代의 所制度에 對하여〉《朝鮮學報》50, 1969), 군현에 남부되어 군현의 경비 및 군현 단위 土貢을 구성하기도 하였다고 생각한다. (朴宗基의 〈高麗 部曲制의 構造와 性格〉 참고)

53) 姜普哲은 앞 논문에서 농민의 개별적 부담인 調(布)과 집단적 부담일 것으로 보이는 貢賦를 구분하여, 貢賦와 調는 같은 품목인 布로써 수납하더라도 기준상 염연히 별개의 항목이라 하였다. 따라서 고려시기 民戶는 租·布·役과 貢賦를 부담하였으며, 貢賦는 고려후기의 자료에 등장하는 常徭와 雜貢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農民의 負擔> 1980 참고, 또 李貞熙의 〈高麗後期 稕役收取의 實態와 變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것을 도식화하면, 고려시기 民戶가 부담하였던 것은 租+布+役+貢賦(=常徭+雜貢)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위의 논자들은 고려전기에 나타나는 稕役을 常徭과 雜貢의 略語로 보고 있지만, 꽤 그렇게 단정할 수 만은 없다고 보인다. 또, 고려후기의 기록 중에는 雜貢이 貢賦의 부가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高麗史》卷 78, 食貨 1 貢賦 忠肅王 元년 正월 기록 참고), 고려시기의 貢賦가 곧 常徭와 雜貢으로 구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위의 설명에 의하면, 貢賦는 3稅와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별개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수취과정상의 문제로서, 실제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調(布)와 貢賦는 전혀 다른 세목이 아니라, 調는 군현단위로 부과된 貢賦(土貢)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54) 《高麗史》卷 30, 忠烈王 11년 3월 辛卯「下旨 一. 每月 常膳及別膳進供時 重斂殘民 以爲私用 痛行禁止」

같은책, 卷 84, 刑法 1 職制 恭愍王 11년 6월 「監察司上言 舊制 外官例進 朔膳外 無供別膳者 今大小官 名爲別膳 敷民土宜及酒肉等物 饋遺權貴 其弊莫甚 自今請罷別膳」

같은책, 卷 80,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懿宗 3년 2월 「以封王太后 諸州縣進奉長吏·從卒等(이하 생략)」

55) 李基白 〈高麗 州縣軍考〉《高麗兵制史研究》1968, pp. 206—208 참고.

56) 尹用出 〈15·16세기의 稕役制〉《釜大史學》10집, 1986.

요역은 일반 民戶의 丁이 부담하는 役 중 지방에서 동원되는 稕役(貢役·지방차원의 토목공사 등)을 제외한 부분으로 형성된다 하겠다. 즉 일반 丁의 요역은 중앙 정부의 차원으로 징발되는 경우와 군현의 차원으로 징발되는 경우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군현단위로 징발되어 주로 국가차원의 토목공사 등에 동원되었으며, 후자는 군현의 土貢을 조달하기 위한 貢役과 군현 차원의 토목공사에의 동원이 그 주내용을 형성하였다고 보아진다. 이때 중앙에서 징발하는 稕役의 양 역시 각 군현의 戶口수 특히 丁의 수와 관련하여 分定되었으며, 이와 같은 요역의 差定업무는 다른 稅目과 마찬가지로 각 군현의 守令·鄉吏들이 담당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군현을 단위로 부과한 稅目에 대하여 현물부담과 노동력부담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 전기 民戶의 부담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고려전기 民戶가 부담하였던 稅目으로는 “三稅”로 일컬어지던 租·布·役이 있다. 이 租·布·役이 고려전기 民戶의 기본적인 稅目이었음은 다음과의 기록들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① 成宗 7년 12월에 判하기를 “水·旱·蟲·霜으로 재난을 입어 田이 4分이상 손상되었으면 租를 免除하고, 6분이상이면 租·布를 免除하고, 7분이상이면 租·布·役을 모두 免除한다”고 하였다. (《高麗史》卷 80, 食貨 3, 賑恤 災免之制)⁵⁷⁾

② 文宗 4년 11월에 判하기를 “田 1結을 十分으로 나누어, 損이 4분에 이르면 租를 免除하고, 6분이면 租·布를, 7분이면 租·布·役을 모두 免한다”고 하였다. (같은책, 卷 77, 食貨 1, 踏驗損實)⁵⁸⁾

③ 肅宗 7년 3월에 三司가 아뢰기를 “東京管內의 州·郡·鄉·部曲 등 19所는 작년의 오랜 가뭄으로 많은 배성들이 難주하고 있읍니다. 令文에 의해서 손실이 4분이상이면 租를 免除하고 6분이상이면 租·調를, 7분이상이면 課役을 모두 免除하여 주되, 이미 납부된 것은 내년의 租稅로 折減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같은책, 卷 80, 食貨 3 賑恤 災免之制)⁵⁹⁾

57) 成宗 7년 12월 判「水旱虫霜爲災 田損四分以上免租 六分免租布 七分租布役俱免」

58) 文宗 4년 11월 判「田一結率十分爲定 損至四分除租 六分除租布 七分租布役俱免」

59) 肅宗 7년 3월 「三司奏 東京管內州·郡·鄉·部曲 一九所 因去年久旱 民多飢困 乞依令文 損四分以上免租 六分以上租調 七分以上課役俱免 已輸者聽折減來年租稅」

위의 기록들은 고려전기 民戶의 기본 稅目인 租·布·役의 減免規定인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그 해의 田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民戶에 대한 租·布·役의 부과가 民戶의 土地耕作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고려전기의 災免 규정은 중국 唐代의 다음 규정과 거의 같다.

武德 7년(624)에 처음으로 律令을 정하였다.(생략) 무릇 水·旱·蟲·霜으로 재난을 입어 10分 중 손실이 4分 이상이면 租를 免除하고, 손실이 6分 이상이면 調를 免除하고, 손실이 7분이 상이면 課役을 모두 免除하여 준다. (《舊唐書》卷 48, 食貨 上)⁶⁰⁾

이것은 唐代 均田制 下에서의 租·調·役의 減免규정이다. 唐의 均田制에서는, 法制上으로 課戶의 丁에는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租·調·庸을 징수하였다.⁶¹⁾ 즉 唐의 賦稅制度에서 租·調·庸의 징수기준은 課戶의 丁에 지급한 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田損에 따른 租·調·庸의 감면규정은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고려전기의 경우, 唐과 같이 均田制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民戶에 부과된 租·布·役의 징수 기준도 唐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전기에 唐과 같은 田損에 따른 租·布·役의 감면이 규정된 것은 당시 고려 국가의 일반 民戶의 社會經濟的 처지에 대한 인식 및 그 파악방식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고려국가는 民田을 소유한 광범위한 자영농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籍(戶籍·量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租·布·役을 부과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식과 파악 방식은 당시 民戶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借耕者의 존재를 무시한 불합

60) 武德 7년 「始定律令(略) 凡水旱蟲霜爲災 十分 損四分已上免租 損六分已上免租 損七分已上 課役俱免」

61) 姬敏一〈均田制와 租庸調制의 展開〉《世界歷史》5, 1970.

리한 측면을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⁶²⁾ 이러한 고려전기 民戶의 파악방식 및 수취기준의 문제점은 고려 중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표면에 나타나게 된다. 즉 고려중기 이후 지배층의 가령주구와 토지 겹병이 심화되면서 초기의 토지경작을 전제로 한 수취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그러한 것은 중기 이후 광범위한 流民의 발생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겠다.⁶³⁾

다음으로 위와 같이 토지경작을 전제로 民戶에 부과된 租·布·役의 내용과 그 정수기준에 대하여 군현단위의 부세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⁶⁴⁾

租는 곧 田租로서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구실이다. 고려전기 租는 민전의 소유자가 국가에 地稅의 의미로서 부담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부담량은 매년 수확량의 1/10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國·公有地의 경작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에 부담하던 地代 역시 租로 표현되고 있어서, 당시 民戶가 부담하던 租는 경작하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즉 경작토지가 자기 소유지인지, 國·公有地인지에 따라서, 그 성격에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다.⁶⁵⁾ 다만 고려초에 정해진 租의 감면규정에는 그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모든 토지에서는 국가에 租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田柴科와 같은 收租權分給體系와 관련하여 租가 분급되거나 免租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가에 租를 부담하던 토지는 公田⁶⁶⁾으로 표현된 토지였다.

이러한 公田租는 義倉租 등과 함께 군현단위로 정수되어,⁶⁷⁾ 각 군현의

62) 고려전기에 借耕者가 존재하였음은 《高麗史》卷 78, 食貨 1 田制 租稅條의 光宗 24년 12월의 기록과 睿宗 6년 8월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浜中昇은 위에 인용한 災免規定이 적용된 것은 民田에 국한한 것으로 보았다. 〈高麗前期의 小作制와 그 條件〉 《歷史學研究》 509호, 1982)

63) 文宗·睿宗代부터 流民이 발생하며, 明宗代를 전후한 시기에 광범위한 農民·賤民의 亂이 일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펠자는 이러한 流民 및 民亂 빌발의 동기가 고려중기 이후 토지겹병의 심화와 함께, 토지경작을 전제로 한 수취체계의 문제점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64) 租·布·役의 내용과 정수기준에 대한 서술은 머리말에서 제시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펠자 나름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65) 박종진의 〈高麗初 公田·私田의 性格에 대한 재검토〉 참고.

66) 國·公有地와 私有地 중 公의 收租地를 의미한다.

67) 반면, 私田의 경우는 田主가 직접 收租하였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李景植 〈科田의 占有와 그 原則〉 《朝鮮前期土地制度研究》 1986, p.121 참고.

경비와 군현단위의 田賦를 형성하게 되는데, 고려전기의 경우, 군현의 주요 경비에 총당되는 토지는 公須田·公麻田 등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⁶⁸⁾ 따라서 군현단위로 부과된 田賦의 양은 公須田·公麻田 등을 제외한 각 군현에 소속된 公田의 結數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田租의 경우, 군현의 民戶로부터 징수한租가 곧 군현단위의 田賦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에서는 民戶가 부담하던租와 군현이 국가에 부담하던 田賦가 혼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租 이외에 民戶가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調(布)와 役이 있다. 이 중 布는 高句麗의 人稅布⁶⁹⁾나 唐의 調와 연결되는 것으로 戶等에 따라 징수하였던 稅目으로 고려시기의 자료에 散見되는 稅布⁷⁰⁾·調布⁷¹⁾ 등이 바로 그것이라 여겨진다. 布의 징수기준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이해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즉 唐의 九等戶制나《高麗史》刑法志序의 “編戶以人丁多寡 合爲九等 定其賦役”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전기에는 9等戶制가 실시되었으며, 이 9等戶制에 의해서 布의 징수가 이루어 졌으며, 그 내용도 布類가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정도이다.⁷²⁾ 이렇게 징수되었을 布가 군현단위로 부과된 土貢의 일부를 구성하였음을 앞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고려전기 役의 징발과 布의 징수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顯宗 21년 6월에 羅城을 축조하고 重光寺를 영조하는데 役을 진 사람은 그 해의 調布를 减해주었다. (《高麗史》卷 80, 食貨 3, 賑恤 恩免之制)⁷³⁾

68) 《高麗史》卷 78, 食貨 1, 田制 公麻田柴條 참고.

69) 《隨書》卷 81, 高句麗傳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稅 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70) 《高麗史》卷 80,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肅宗 5년 2월 「兎州·府·郡·縣·部曲·雜所 今年稅布半」

71) 註 73) 참고.

72) 李惠玉 앞 책 참고.

73) 顯宗 21년 6월 「築羅城 舜重光寺 赴役者 減今年調布」

이것은 당시 罷城을 축조하고 重光寺를 영조하는데 동원되어役을 진 사람에게 그 해의 調布를 감면해 준 기록인데, 이것을 통하여 당시役의 정발과 調布의 징수가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⁷⁴⁾

당시役의 정발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기록이 있다.

國制에 民은 나이 열여섯이 되면 丁을 삼아 비로소 國役에 服務케 하고 예순이 되면役을 免해 준다. 州郡은 해마다 戶口를 헤아려 編籍하여 戶部에 바치면 모든 徵兵과 調役은 戶籍으로서 뽑아 정하였다. (《高麗史》卷 79, 食貨 2, 戶口序)⁷⁵⁾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徵兵調役”은 매년 州郡이 작성하여 戶部에 보낸 戶籍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고려 전기 民戶가 부담하였던 布나役의 정발은 군현 단위로 편성된 戶籍을 중심으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고려전기의役은 크게 程役과 職役으로 나눌 수 있는데 軍役·鄉役등의 職役은 국가로 부터 職役에 대한 댓가로 토지 등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程役은 아무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지는 노역이었다.

고려시기 요역의 부담계층은 지방제도나 신분제도 연구의 전선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본고에서는 品官, 軍人, 其人, 鄉吏 등의 職役 담당층과 노비를 제외한 층으로서, 部曲制를 포함한 州·府·郡·縣에 편재된 일반 民戶가 요역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民戶가 부담하는 요역은 군현을 단위로 정발되어 일부는 中央 차원의 요역에 동원되고 나머지는 지방 군현 차원의 요역에 총당되었다. 즉, 築城, 宮闈이나 寺院의 영조와 修理, 山陵役, 造船 등의 土木工事, 임금이나 使

74) 唐의 경우에도,役 정발의 규정일수는 20일 이었지만, 그 초과일수에 따라서租·調 등이 차례로 免除되었다. 堀敏一의 앞 논문 참고

75)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 州郡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

臣의 행 차와 관련하여 所歷州郡이 부담하던 役 등을 대체로 국가 차원으로 동원된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군현을 단위로 징발되었다.

반면에 지방 군현 차원의 요역으로는 지방 군현 자체의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중앙에 부담하는 土貢의 조달과 관련된 貢役, 輸役, 국공유지의 耕作노동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⁷⁶⁾ 특히 貢役은 중앙에 부담하는 土貢의 조달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려 전기의 三稅인 租·布·役은 토지의 경작을 전체로 民戶에 부과하였으며, 이것이 국가에서 군현을 단위로 부과한 田賦·土貢·徭役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고려 중기 이후 토지결병의 심화와 함께 토지경작을 전제로 한 수취구조에 문제점이 드러나며, 또한 의우내환과 관련된 국가 재정의 악화에 따라서, 일반 民戶의 부담은 더 커지고 또 불합리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국가는 나름대로의 부세 수취구조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찾게 된다.

IV. 맷 음 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기 賦稅의 收取는 郡縣制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屬郡縣은 행정적으로는 主郡縣을 통하여 중앙에 연결되었지만, 속군현 또한 縣令官級 이상의 군현과 마찬가지로 부세의 수취 단위로 운영되었다. 또한 鄉·部曲 등의 「部曲制」 역시 하나의 수취 단위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못하였다.

고려시기 중앙정부가 군현을 단위로 정수한 것은 크게 현물부담과 노동력 부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와 관련된 賦稅로는 田賦·土貢·進上 등이, 후자와 관련된 것으로는 曹役이 있었다.

76) 曹役징발의 事例는 앞에서 인용한 李惠玉과 李貞熙의 논문을 참고할 것.

田賦는 각 군현에 소속된 公須田·公麻田 등을 제외한 公田의 結負數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 바친다는 의미의 土貢은 外貢으로도 쓰였지만, 고려시기에는 貢物·貢賦라는 용례로 더 많이 쓰였는데, 그 중 常貢(歲貢)은 중앙 정부의 수요를 전제로 하여 각 군현의 產物과 크기에 따라 정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土貢은 각 군현에 소속된 民戶가 부담하였던 調布, 각 군현민의 役(貢役)을 동원하여 조달한 물품, 각 군현에 소속된 所의 생산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국가에서 군현을 단위로 징발하는 오역은 일반 民戶의 丁이 부담하는 役 중 지방차원으로 동원되는 오역을 제외한 부분으로 형성되는데 이 때 중앙에서 징발하는 오역의 양 역시 각 군현의 戶口수 특히 丁의 수와 관련하여 分定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군현을 단위로 부과된 부세의 내용은 고려전기 民戶가 부담하였던 租·布·役에 의해서 구성된다. 租·布·役의 정수기준은 田損에 따른 減免規定의 내용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租·布·役의 정수가 民戶의 토지경작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전제는 당시 民戶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借耕者의 존재를 무시한 불합리한 측면을 가진 것이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중기이후 토지겸명의 심화와 함께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군현단위의 부세를 구성하는 租·布·役의 내용 중, 租의 경우는 그 정수기준이나 군현단위의 田賦와의 관계 등이 비교적 잘 밝혀져 있지만 布와 役의 경우는 그 정수 기준 및 내용, 그리고 군현단위 부세와의 관계에 대하여 아직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고려시기 稅目的用例검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고려중기 이후의 수취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고찰은 고려시기 收取構造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986. 12. 17)